

월간

##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4년 6월호

#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
-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

#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

#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항목 신설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일종RP지원 대상종목 정비)
- 다.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(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)
-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외국인 식별수단 심리시 징구할 수 있는 위탁자 기본정보 반영)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4/5/23 개정 · 2024/5/27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'기업 밸류업 지원방안'(2024. 2. 26, 금융위 · 거래소 등)에 따라 상장법인이 수립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 등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마련해 제재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항목 신설(제8조)
  -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공시 항목 신설
-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 등 구체적인 처리 방법 마련(제13조의3)
  - 납부기한 이내(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)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,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가중벌점 부과 등
    - 가중벌점 = (미납 제재금 / 부과벌점에 곱한 금액) × 1.2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 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4/5/23 개정 · 2024/5/27 시행)
  - 제13조 제21호

####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5/23 개정 · 2024/5/27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-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일중RP지원 대상 증권으로 지정하여 국채시장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위함
  -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환거래 원활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채권(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7항)
  - 일중RP지원은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, 결제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채시장의 중요 결제지원시스템(한은법 제81조의2)

##### 2) 주요 내용

- 일중RP지원 대상종목 정비(제101조의9)
  -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대상종목에 추가

#### 다.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(2024/5/24 개정 · 2024/5/27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-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예측정보를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한 경우 면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-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(제10조 제3항)
  -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예측정보(공정공시대상정보)를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

### 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(2024/5/24 개정 · 2024/5/27 시행)
  - 제10조 제3항

####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4/5/21 개정 · 2024/5/27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- 외국인 투자등록제도(IRC)가 폐지됨에 따라(2023. 12.), 변경 · 확대 되는 외국인 식별수단을 심리시 징구할 수 있는 위탁자 기본정보에 반영하고 투자경고종목의 지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  - (기존)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
  - (개정)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, 법인식별기호(LEI), 여권번호

##### 2) 주요 내용

-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(별지 제6호 서식)
  - 심리자료 징구 서식의 위탁자 기본정보 중 ‘고유번호’의 개념에 외국인 투자등록번호, 법인식별기호(LEI), 여권번호가 포함되도록 반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개정)

나.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(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)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4/5/23 개정 · 2024/5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일부 사모펀드 유형에 대한 통계 파악 등을 위하여 분류코드를 신설하고, 펀드 보수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자료 제출 전산서식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(별지 제15호)

-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(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) 및 창업·벤처전문사모펀드(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) 분류 코드 개설
  - 집합투자기구 12차 특성분류코드에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(32), 창업·벤처전문사모펀드(33) 신설

□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서식 개정(별지 제18호)

- 일부 펀드의 보수율 인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으로 별지 제18호의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내 보수정보 제출 전산서식을 변경
  - 보수 1/1000 기준 소수점 아래 2자리 → 1/1000 기준 소수점 아래 5자리로 제출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(2024/5/20 개정 · 2024/5/22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편의 및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4. 4. 22. 시행)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
  -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허용에 따라, 거래시간 확대

#### [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변경사항]

구분		시가 단일가	접속거래	종가 단일가
국내지수 선물스프레드	기존	-	08:45~15:35	-
	개정	08:30~08:45		15:35~15:45
돈육선물 스프레드	기존	-	10:15~15:35	-
	개정	09:45~10:15		15:35~15:45
그 외 선물스프레드	기존	-	09:00~15:35	-
	개정	08:30~09:00		15:35~15:45

- 주식선물 관련 개정사항
  - 호가유형 확대
    - (기존) 지정가호가 → (개정) 모든 호가 유형(지정가, 시장가,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)
  -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
    - (기존) 3% 이상 5% 이내 → (개정) 3% 이상 6% 이내
  - 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
    - (기존) 최장 3년, 9개 → (개정) 최장 1년, 6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